

도보



제686호. 2017. 11. 9.(목)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목 차

조 례

제193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3

입법예고

제2017-11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7-11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람									
--------	--	--	--	--	--	--	--	--	--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10월 31일)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 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7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39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제주교통복지카드”란 제주자치도가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버스 요금면제 기능을 포함하는 카드로서 제주자치도가 선정한 사업자가 발급하고 운영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제주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운행노선의 지정) 도지사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외곽지 비수익노선으로 민영버스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2.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으로 업체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2. 제6조제1항제6호: 제주교통복지카드

제7조(특별회계 설치)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입금
2. 자본수입금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예산 지출
2. 자본예산 지출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주자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버스운송사업 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2. 그 밖에 그 성질 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버스운송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특별회계의 2017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공포(2016. 8. 12. 시행)되어 개정된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최적구배: 최적경사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선덕로 3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 전화 및 전송: 064-710-8627, FAX 064-742-8589
 - E-mail: kgh0491@korea.kr
 -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기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2017. 7. 18 시행) 개정된 도로점용료의 감면 관련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출입하는 통행로 점용료 면제(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나.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 감면(안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나.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점용료 감면(안 제8조제1항제3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선덕로 3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 전화 및 전송: 064-710-8604, FAX 064-711-8607

- E-mail: korrigan@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8. ~ 2017. 1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